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806호
2023년 7월 10일
월요일

공 고

- 공 고 제 1269 호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 도시 재 생 과 2
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공 고 제 1289 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 자동차 관리 과 5
행사 통보

고 시

- 고 시 제 8 2 호 도로명주소 고시공고 및 게재 토 지 정 보 과 7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69호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40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전체의 각종 행위를 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

2023. 7. 10.
남 동 구 청 장

1.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구지정 제안자 명칭(성명) 및 주소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518-4, 남동구 간석동 218 일원	53,205㎡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충무공동)

2. 관련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열람기간	열람장소
2023년 7월 10일 ~ 2023년 7월 24일(14일간)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 열람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07. 10. ~ 2023. 07. 24.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직접, 우편 또는 팩스 제출
※ 열람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장소

구 분	주소(FAX)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민원동 3층, (FAX) 032-440-8667
부평구청 도시개발과	(21554)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 4층, (FAX) 032-509-7636
남동구청 도시재생과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633(만수동) 3층, (FAX) 032-453-2959

- 기타 : 본 열람내용은 최종 확정 내용이 아니며, 추진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4. 의견청취 공고가 있는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인천 동암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예정지는 의견 청취 공고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40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되며, 행위제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
* 허가 전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切土), 성토(盛土), 정지(整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 4) 토석의 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토지의 분할·합병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 4)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 5)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6)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 (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정책과(☎032-440-4469),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22), 남동구청 도시재생과(☎032-453-2982),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지역균형개발부(☎032-890-5497, 58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3-1289호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에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직권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 보유자는 회수·말소 등 자진처리하시고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3.7.7. ~ 2023.7.22.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5. 공고 및 강제처리(직권폐차)대상 : 63누1283
6. 유의사항

가. 자동차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공고기간 내에 자동차를 자진처리(자진회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100~15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강제처리(폐차)시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됩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대체압류 등)를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직권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문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자동차관리과(☎032-453-2826)

2023. 7. 7.

남 동 구 청 장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대상

연번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방치장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유자	생년월일 (법인/사업자)	주소	견인일자	보관장소	연락처
1	2022-00134	63누1283	싼타페	백범로248번길 65 앞 이면도로	김*석	77****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길 *~**(공항동)	2022.07.15.	(주)서울폐차 사업소	032-442-6660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대상 압류 및 저당내역

접수번호	차량등록번호	차명	소유주	생년월일	사용본거지	구분	채권자/축탁기관/단속부서	등록일자	저당가액/공문번호/ 단속공무원	압류내역/영치내역
2022-00134	63누1283	싼타페	김*석	77****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중로**번길 **(청천동)	압류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09.14	세무1과-14296	지방세 체납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20.11.13	주차지도과-50027	주정차위반과태료(2020-09-001006)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20.11.13	주차지도과-50027	주정차위반과태료(2020-09-001486)
						압류	미추홀구청자동차관리과	2021.04.09	자동차관리과-25701	주정차위반과태료(2021-01-000871)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21.07.13	2021D2304003911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230470210118801)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21.07.26	2021D2304004017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230470210155246)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21.08.24	2021D2304004405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230470210267943)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22.02.10	주차지도과-5016	주정차위반과태료(2021-11-000388)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22.03.07	주차지도과-9262	주정차위반과태료(2022-01-000636)
						압류	부평구청주차지도과	2022.03.07	주차지도과-9262	주정차위반과태료(2022-01-000637)
						압류	인천광역시부평구	2022.04.08	교통행정과-2074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20220106000656)
						압류	인천부평경찰서	2022.05.09	2022D2304004086	과태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록 (230470211412049)
						영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징수과	2022.02.17		보관장소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세입징수과

고 시

남동구 고시 제2023-8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7.

남 동 구 청 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725 (장수동)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21번길 20-24 (고잔동)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람 (2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4)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 01. 01.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5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인로 3725 (장수동)	2009.7.10.	수원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2023.7.7.	건물 등의 주된 출입구가 수인로 3725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3725를 건물번호로 부여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21번길 20-24 (고잔동)	2023.7.7.	건물멸실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로21번길 20-26 (고잔동)	2023.7.7.	건물멸실	